

##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4년 9월 3일(충청북도교육감)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9월 3일
- 다. 상정일자 : 2004년 9월 16일(제3차 교육사회위원회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교육국장 김전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제명인 “단재교육상조례”를 “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”로 하여 시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, 시상부문 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는 등,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#### 나. 주요골자

- 제명인 “단재교육상조례”를 “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”로 하고,
- 시상부문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며(안 제1조 내지 제3조),
- 추천권자를 ‘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, 교육장, 고등학교장’에서 ‘직속기관장’을 추가하고(안 제4조제1항),
- 심사위원수를 “15인 이내”에서 “13인 이상 15인 이내”로 하며 (안 제5조제2항),
- 위원 자격을 “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·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”로 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(안 제5조제3항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지용-옥)

- 금번 제출된 “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”은
  - 단재교육상의 시상주체를 명확히 하고, 수상대상자 추천권을  
직속기관장에게도 부여하며, 심사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 
수 있도록 하고, 현행 규정에 없는 위원자격 조항을 신설하는 등  
단재교육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
타당하다고 사료됨
- 그러나,
  - 시상부문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려는 이유와 향후 학생부문의  
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 9. 첨부서류

-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

##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

단재교육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충청북도단재교육상(이하 “교육상”이라 한다)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상부문) 교육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도부문
2. 학술부문
3. 공로부문

제3조(수상대상자)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사도부문 :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전·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
  2. 학술부문 :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전·현직 교원, 교육전문직 및 일반인
  3. 공로부문 :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(사립학교 포함) 직원, 일반인, 단체 및 기관
- ②수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.
- ③교육상 수상은 1회에 한한다.

제4조(수상대상자 추천) ①교육상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, 교육장,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이 추천한다.

- ②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 (별지 제1호 서식)
2. 추천조서 (별지 제2호 서식)
3.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필요한 경우)

제5조(심사위원회 설치) ①교육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단재교육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·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.
-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
-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 주재한다.

-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충청북도 교육청 중등인사담당이 된다.

제7조(수상후보자 심사) ①위원회에 교육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심사위원회를 둔다.

- ②분과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.
- ③분과심사위원회를 통합하는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.
- ④분과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8조(수상자의 결정) ①위원회는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부문별 2인 이내의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.

②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.

제9조(시상) ①교육상은 매년 1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

②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.

제10조(실비변상)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단재교육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충청북도단재교육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.

## 【별표】

**수상후보자 공적심사 기준(제3조제2항 관련)**

부 문	공 적 심 사 기 준
사도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한 실적</li> <li>○ 교육 발전에 기여한 실적</li> </ul>
학술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한 실적</li> <li>○ 학술·예술·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교육적·사회적으로 공헌한 실적</li> </ul>
공로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실적</li> <li>○ 교육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실적</li> </ul>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##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추천서

### ○ ○ 부 문

성명 :

생년월일 :

근무처 :

직위 :

주소 :

위 사람을 년도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추천권자(기관명, 직, 성명)

직(사)인

충청북도교육감 귀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##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추천조서

○ ○ 부 문

사 진  
(반명함판)

성 명 :

생년월일 :

근무처 :

직위 :

주소 :

## 1. 학력

기간	학력	비고

## 2. 경력

기간	경력	비고

## 3. 실적 및 공적개요

기간	실적 및 공적	비고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##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심사조서

○ ○ 부 문

심사위원

(인)

---

(인)

---

대상자명	근무처	심사의견	추천순위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(조례 제명) 단체교육상조례	(조례 제명) 충청북도단체교육상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와 타의 모범이 된 학생에 대하여 단체교육상(이하 "교육상"이라 한다)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유·초·중등 교육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충청북도단체교육상(이하 "교육상"이라 한다) 시상에
제2조(시상부문)(신설)	제2조(시상부문) 교육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교원 및 일반부문 가. 학술상 나. 사도상 다. 공로상	(삭제) 1. 사도부문 2. 학술부문 3. 공로부문
2. 학생부문 가. 면학상 나. 총효상 다. 봉사상	(삭제)
제3조(수상대상자)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	제3조(수상대상자) ①………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1. 교원 및 일반부문 가. 학술상 : 충청북도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(이하 "각급학교"라 한다) 교직원, 교육행정기관, 교육연구기관, 교육연수·수련기관, 도서관의 직원 및 일반인 나. 사도상 :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	(삭제) 1. 사도부문 :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전·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
다. 공로상 : 충청북도내 교육행정기관, 교육연수·수련기관,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, 일반인, 단체 및 기관	2. 학술부문 :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전·현직교원, 교육전문직 및 일반인
2. 학생부문 :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학생 ②한번 교육상을 받은 자는 다시 받을 수 없다. ③수상대상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별지 1과 같다.	3. 공로부문 :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(사립학교 포함)……… (삭제) ②수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. ③교육상 수상은 1회에 한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8조(추천 및 심사)⑤</b> 교육상 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.</p> <p>1. 교원 및 일반부문 : 교육장, 고등학교장, 본청국장급이상</p> <p>2. 학생부문 : 교육장, 고등학교장</p> <p>⑥ 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추천서 [별지 제2호 서식]</p> <p>2. 추천조사 [별지 제3호 서식]</p> <p>3.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필요한 경우)</p>	<p><b>제4조(수상대상자 추천) ①</b>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, 교육장,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이 추천한다.</p> <p>(삭제)</p> <p>② ..... 다음 서류를 .....            1. ..... : (..... 제1호 ....)            2. ..... : (..... 제2호 ....)           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조(심사위원회 설치)</b> 교육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단재교육상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<b>제5조(위원회 구성)</b>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교육상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후 15인 이내로 위촉하며,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교육상 시상 종료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.</p> <p><u>(신설)</u></p> <p>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</p>	<p><b>제5조(심사위원회 설치) ①</b>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심사위원회....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·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.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</p> <p>⑤ ..... 총괄한다.</p>
<p><b>제6조(회의 및 의사)</b>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</p> <p><u>(신설)</u></p>	<p><b>제6조(위원회 운영) ①</b>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</p> <p>② 위원회 ..... 재적위원 .....            ..... 개의하고 .....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사 1인을 두되, 각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중등인사 담당이 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7조(간사와 서기)</b> ①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.</p> <p>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.</p>	(삭제)
<p><b>제8조(추천 및 심사)</b> ①위원회에 교육상 수상 대상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 심사부를 둔다.</p> <p>②분과 심사부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③분과 심사부에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 위원이 호선한다.</p> <p>④심사부장은 심사부를 통합한다.</p>	<p><b>제7조(수상후보자 심사)</b> ①………수상 후보자……………분과심사위원회…….</p> <p>② 분 과 심 사 위 원 회…….</p> <p>..</p> <p>③………심사위원회를 통합하는………….</p> <p>④분과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위위원회에 회부한다.</p>
<p><b>제8조의 2(수상후보자 선정)</b> ①각 심사부에서 는 각 상별로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2인 이내로 선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조서를 작성 위위원회에 회부한다.</p> <p>②위위원회는 제1항의 수상후보자를 12인 이내로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다.</p>	(삭제)
<p><b>제9조(수상자의 결정)</b> 수상자는 부문별 분과 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심사후 교육감이 결정한다.</p>	<p><b>제8조(수상자의 결정)</b> ①위위원회는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부문별 2인 이내의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.</p> <p>②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.</p>
<p><b>제10조(시상)</b> ①교육상은 매년 1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</p> <p>②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.</p>	<b>제9조(현행과 같음)</b>
<p><b>제11조(실비변상)</b>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b>제10조(현행과 같음)</b>

현 행		개 정 안	
<b>【별지 1】 수상대상자 공적심사 기준</b>		<b>【별표】 …후보자 ……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b>	
<b>상별</b>	<b>공 적 심 사</b>	<b>부 문</b>	<b>………심 사 기 준</b>
<b>학술상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교육에 공헌</u>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교육에 관한 저서 간행으로 교육 현장에 공헌</u>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교원 및 일반인,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외 부문에서 학술 또는 예술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사회적 공헌</u></li> </ul>	<b>사도부문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한 실적</u>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교육 발전에 기여한 실적</u></li> </ul> <p>(삭제)</p>
<b>사도상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학생교육을 위해 헌신, 타 교원의 귀감이 됨</u></li> </ul> <p>(신설)</p>	<b>학술부문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한 실적</u>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학술·예술·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교육적·사회적으로 공헌한 실적</u></li> </ul>
<b>공로상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충청북도내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공헌이 현저</u></li> </ul> <p>(신설)</p>	<b>공로부문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 실적</u>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교육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실적</u></li> </ul>
<b>면학상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면학에 힘써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</u>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예·체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</u>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과학, 기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</u></li> </ul>	(삭제)	(삭제)
<b>중호상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투철한 애국심</u>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효행이 지극</u>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반공의 생활화</u></li> </ul>	(삭제)	(삭제)
<b>봉사상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<u>협동, 봉사, 준법, 선행</u></li> </ul>	(삭제)	(삭제)

